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소정 소유물건 (2025타경1166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평가서 번호	대화 16-2504-2-003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54번길 13,3층
대표전화 : 052-710-5530 FAX : 052-710-5540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문의선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지사장

문의선

김성훈



감정평가액	일천팔백구십만원정 (₩18,900,00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평가목적 (제출처)	법원경매 (제출처 : 울산지방법원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소정 (2025타경1166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 04. 29	2025. 04. 29	2025.04.29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 1,575x- 2	토지	787.5	24,000	18,900,000
	합 계					₩18,900,000.-
		이	하	여	백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대상물건 개요

1. 토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기호	소재지	면적 (m ²)	지 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초산리 455-21	1,575 중 787.5	임야	자연녹지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완경사지	8,250 (202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소재 "하북체육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이론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4월 29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4월 29일임.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5.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2. 감정평가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 가. 본 감정평가는 귀 법원의 의뢰에 따라 '김소정' 지분만의 감정평가로서 평가 대상부분의 위치확인 등이 곤란한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 나. 본건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및 활잡목 등은 임지와 수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1.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1. 토지의 감정평가

1.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내역

1.1.1. 개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text{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 \times \text{그 밖의 요인 보정}$$

1.1.2.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현재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

위의 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공시기준일: 2025. 1. 1)

기호	소재지	면적 (m ²)	지 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m ²)	비 고
A	삼수리 산 2-4	26,380	임야	자연림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완경사	6,340	선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3. 시점수정치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이하 동일).

경상남도 양산시 (녹지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5.01.01 ~ 2025.04.29	0.257 (1.00257)	경상남도 양산시 (25.01.01~25.04.29) (녹지) 2025.01.01 ~ 2025.03.31 : 0.199 2025.03.01 ~ 2025.03.31 : 0.062 $(1 + 0.00199) * (1 + 0.00062 * 29/31)$ ≈ 1.00257

1.1.4. 지역요인 비교치 산정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함.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5.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하며,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음.

■ 개별요인 비교항목(임야지대)

개별요인비교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표준지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1	A	1.00	1.05	1.00	1.00	1.050

기 호	개별요인 비교 내용
1	대상은 표준지 대비 자연조건(면적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 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 7. 10. 선고 98두6067, 1993. 9. 10. 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단가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가격 수준, 낙찰가율 수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	비교사례 단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단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1.1.6.1.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

-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 내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단가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목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선례 1	삼수리 산 *_**	24,595	임야	2024.03.18	23,000 (평균단가)	6,700	시가 참고	자연림	자연녹지
선례 2	백록리 산 ***_*	15,234	임야	2024.11.21	33,000	3,230	법원 경매	자연림	자연녹지
선례 3	삼수리 ***	1,364	답	2025.02.19	50,000	18,800	담보	답	자연녹지
선례 4	답곡리 산 *_***	44,576	임야	2024.05.29	11,000	3,290	담보	자연림	자연녹지
사례 1	삼수리 산 *_**	41,058	임야	2024.12.02	23,000	6,570	실거래	자연림	자연녹지
사례 2	순지리 산 *_**	10,296	임야	2024.08.13	30,109	28,800	실거래	자연림	자연녹지

※ 상기 개별공시지가는 선례(사례)의 기준시점(거래시점)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거래사례 배분내역

구분	거래가액(원)	사용 승인일	건물구조 /용도	건물면적 (㎡)	적용 재조달원가	내용 년수	경과 년수	잔존 년수	비 고
사례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산식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 토지단가(원/㎡)								
	944,334,000 / 41,058 = @23,000								
사례 2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산식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 토지단가(원/㎡)								
	310,000,000 / 10,296 = @30,109								

■ 인근지역 정상지가 수준 검토

용도지역	토지용도	가격수준(원/㎡)	비 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림	22,000~24,000	대상토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

1.1.6.2. 비교선례(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인근에 위치하는 <선례 1>을 비교선례(사례)로 선정하였음.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단가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목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비 고
선례 1	삼수리 산 **_*	24,595	임야	2024.03.18	23,000 (평균단가)	6,700	시가 참고	자연림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6.3. 격차율 검토

■ 비교선례(사례)와 비교

- 시점수정

경상남도 양산시 (녹지지역) 평가선례(1)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03.18 ~ 2025.04.29	1.066 (1.01066)	경상남도 양산시 (24.03.18~25.04.29) (녹지) 2024.03.01 ~ 2024.03.31 : 0.033 2024.04.01 ~ 2024.04.30 : 0.051 2024.05.01 ~ 2024.05.31 : 0.092 2024.06.01 ~ 2024.06.30 : 0.069 2024.07.01 ~ 2024.07.31 : 0.058 2024.08.01 ~ 2024.08.31 : 0.109 2024.09.01 ~ 2024.09.30 : 0.095 2024.10.01 ~ 2024.10.31 : 0.103 2024.11.01 ~ 2024.11.30 : 0.113 2024.12.01 ~ 2024.12.31 : 0.099 2025.01.01 ~ 2025.03.31 : 0.199 2025.03.01 ~ 2025.03.31 : 0.062 $(1 + 0.00033 * 14/31) * (1 + 0.00051) * (1 + 0.00092) *$ $(1 + 0.00069) * (1 + 0.00058) * (1 + 0.00109) *$ $(1 + 0.00095) * (1 + 0.00103) * (1 + 0.00113) *$ $(1 + 0.00099) * (1 + 0.00199) * (1 + 0.00062 * 29/31)$ ≈ 1.01066

-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건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선례(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 개별요인 비교

기 호	비교 선례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A	1	1.00	1.00	1.00	1.00	1.000

기 호	개별요인 비교 내용
A	전반적으로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격차율 산정

구 분	기준단가(원/㎡) 공시지가(원/㎡)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격차율
평가선례(1)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23,000	1.01066	1.000	1.000	23,245	3.657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단가	6,340	1.00257	-	-	6,356	

1.1.6.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적용 보정치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장래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액 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이 타당함.	3.65

1.1.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산식: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 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6,340	1.00257	1.000	1.050	3.65	24,360	24,000

1.1.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787.5	24,000	18,900,000
합 계	787.5	24,000	18,9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내역

1.2.1.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text{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

1.2.2.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1>을 선정하였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m ²)	지목	거래시점	거래단가 (원/m ²)	개별 공시지가 (원/m ²)	이용상황	용도지역	비 고
사례 1	삼수리 산 **-*	41,058	임야	2024.12.02	23,000	6,570	자연림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환경사지

1.2.3. 사정보정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4. 시점수정치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경상남도 양산시 녹지지역의 경우 거래일자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음. 기준시점 당시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경상남도 양산시 (녹지지역) 거래사례(1)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12.02 ~ 2025.04.29	0.353 (1.00353)	경상남도 양산시 (24.12.02~25.04.29) (녹지) 2024.12.01 ~ 2024.12.31 : 0.099 2025.01.01 ~ 2025.03.31 : 0.199 2025.03.01 ~ 2025.03.31 : 0.062 $(1 + 0.00099 * 30/31) * (1 + 0.00199) *$ $(1 + 0.00062 * 29/31) = 1.00353$

1.2.5. 지역요인 비교치

결 정 의 건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토지는 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1.2.6.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사례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1	1	1.00	1.05	1.00	1.00	1.050

기 호	개별요인 비교 내용
1	대상은 사례 대비 자연조건(면적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산식: 거래사례 토지단가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3,000	1.000	1.00353	1.000	1.050	24,235	24,000

1.2.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787.5	24,000	18,900,000
합 계	787.5	24,000	18,9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 토지 시산가액 결정

1.3.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기 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8,900,000	18,900,000
합 계	18,900,000	18,900,000

1.3.2.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 호	토지면적(m ²)	토지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1	787.5	24,000	18,900,000
합 계	787.5	24,000	18,900,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455-21	임야	자연녹지지역	1,575x- 2	787.5	24,000	18,900,000	김소정지분
합 계								₩18,900,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부근의 상황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소재 "하북체육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체육공원 및 야산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황

인접지 대비 완만한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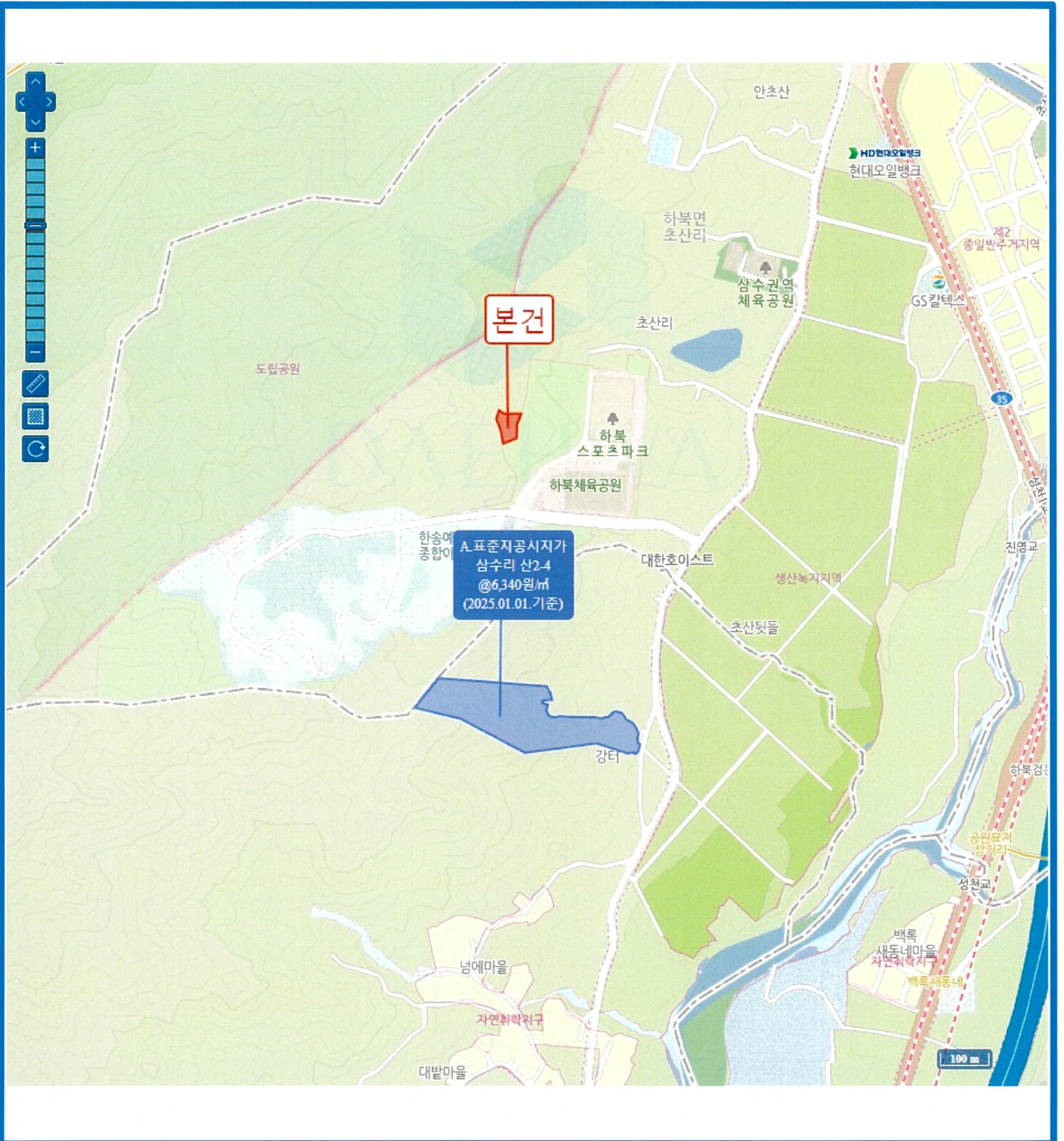
(2)기 타
없 음.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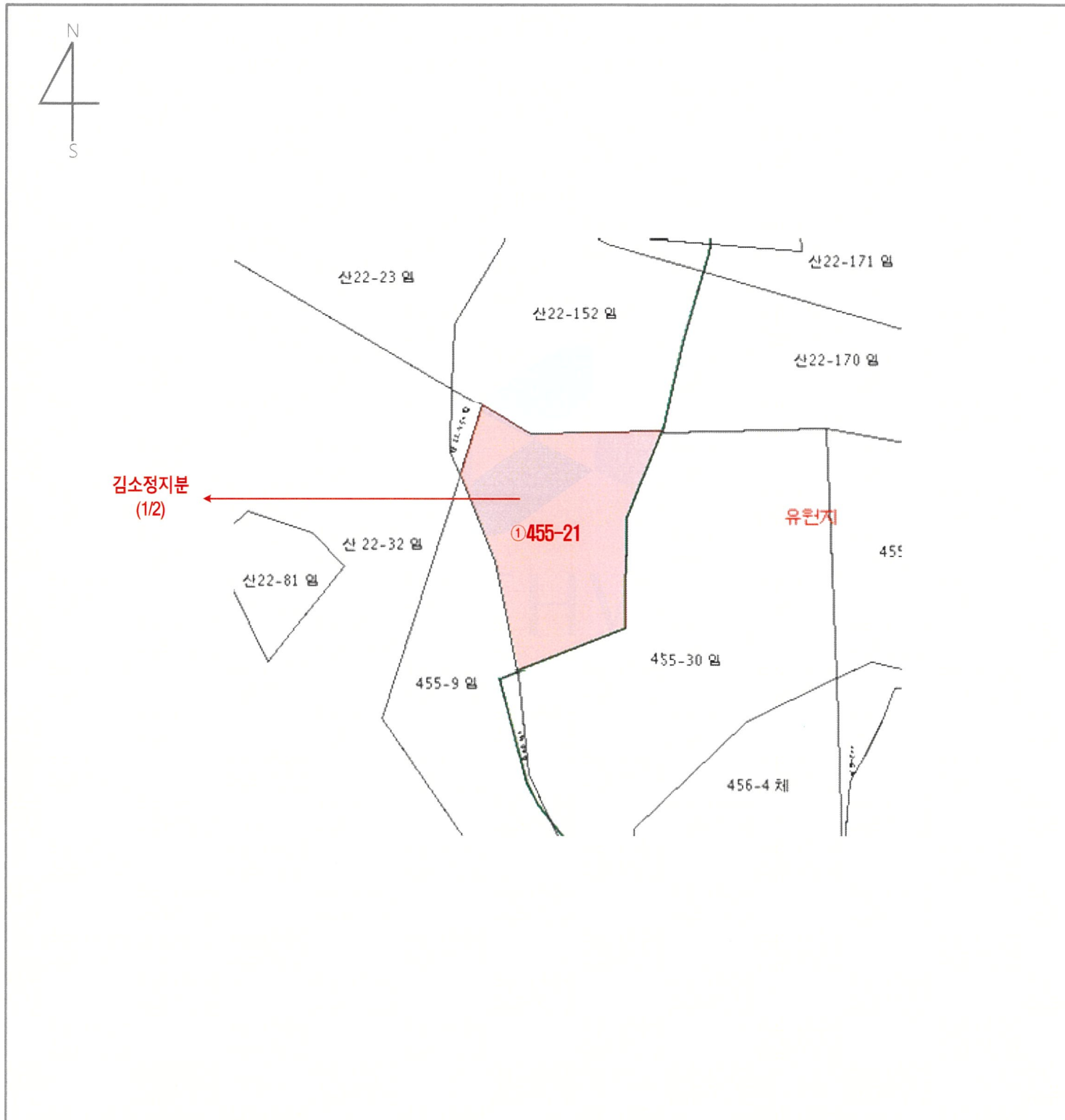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455-21



지 적 개 황 도

S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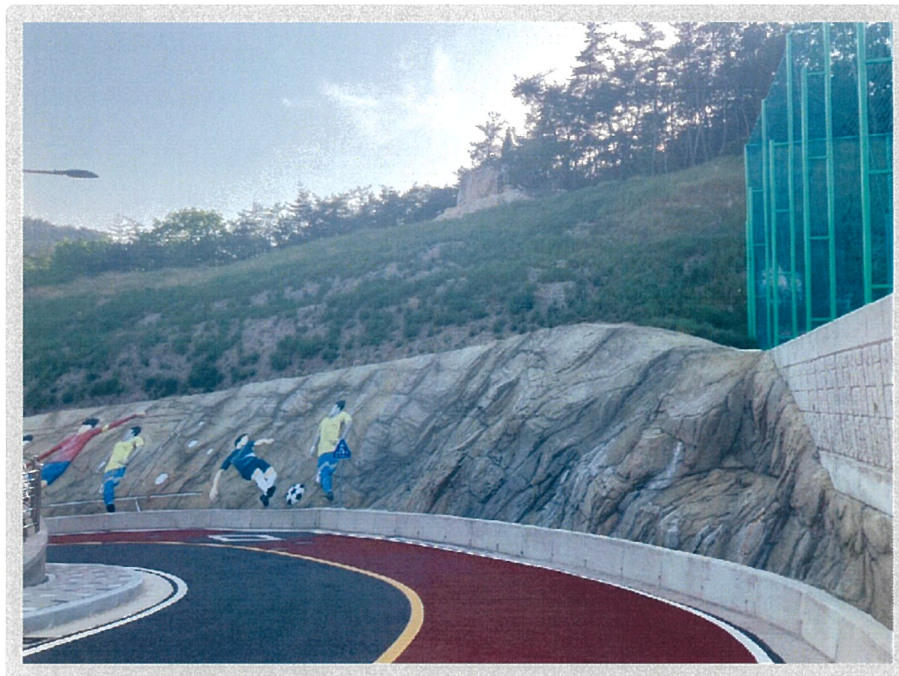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	제시외건물
	도시계획선			

현 황 사 진



【 본건전경 - 남동측에서 촬영 】



【 주위환경 - 남동측에서 촬영 】

(주) 대화 감정평가법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54번길 13, 3층

TEL.052-710-5530 FAX.052-710-5540

문서번호 : 대화 16-2504-2-0036호

시행일자 : 2025-04-30

수신 :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참조 : 경매2계

제목 : 감정평가회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번호			
처리과		공람		
담당자				

1. 저희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4-22자 귀 제 『2025타경11660』 호로 의뢰하신 『김소정 소유물건(2025타경11660)』 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첨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구서 1부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지사장 김성훈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대화 16-2504-2-0036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귀하

— 鈔사십사만팔천팔백원整 (₩448,800.-)

2025-04-22 일자 귀 제 『2025타경11660』 호로 의뢰하신 『김소정
소유물건(2025타경11660)』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관한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290,000	● 평가수수료 ●	
실비	여비	기본수수료 ≒290,000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4,000
	기타실비		2,000
	특별용역비		
소계	₩118,800		
합계	₩408,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	₩40,800.-		
총계	₩448,800.-		
기납부착수금	₩.-		
정산청구액	₩448,8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420036)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100-036-821350 (예금주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 사업자번호 : 684-85-02405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지사장 김성훈



(TEL. : 052-710-5530 FAX. : 052-710-5540)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

법원코드				과코드		재판부번호	
		0	2				

사건번호	진행번호	출급금액			원천징수세금액		세금공제후 지급액
		원금	부가가치세	계	소득세	주민세	
2025타경 11660		₩408,000	₩40,800	₩448,800			₩448,800

출급금종류	감정료
-------	-----

출급청구일	2025. 04. 30
-------	--------------

청구자	성명	김성훈	전화	052-710-5530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84-85-02405	우편번호	44774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54번길 13,3층		

대리인	성명		전화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출급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	<input type="checkbox"/> 원금 및 이자지급
	<input type="checkbox"/>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input type="checkbox"/> 이자만 지급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 100-036-821350 (예금주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	--

위 의 보 관 금 의 출 급 을 명 함 .
2025 년 04 월 30 일

울산지방법원 경매2계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